

개정된 축산법 주요내용

–축산물 안정가격대 설정·육류 등급제 도입–

–홍보부–

◇…농림수산부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법개정 법률을 6월 11일 공포했다. 이번 축산법의 개정 이유는 축산물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,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축산물의 생산성제고 및 유통개선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이다. 따라서 본지는 일반 양축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·발췌하여 게재한다.

〈편집자 주〉…………… ◇

제3장

제2절 축산물 가격안정

제34조(축산물의 안정가격 결정·고시)① 농림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물(이하 “지정축산물”이라 한다.)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안정상한 가격과 안전하한 가격을 매년 3 월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·고시해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상한 가격과 안정하한 가격은 지정 축산물을 생산하는 가축의 산지가격 등락주기 등을 기초로 한 일정기간의 농가판매 가격·생산비·가격 등락폭을 기준으로 하고, 재생산 및 안정적 소비증면 등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.

제35조(가격안정조치)① 농림수산부장관은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분류도매시장 및 축산분류공판장(이하 각각 “도매시장” 및 “공판장”이라 한다)에서 지정 축산물의 가격이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한 안정상한 가격과 안정하한 가격의 범위 안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수매·비축·방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농림수산부장관은 지정축산물의 가격이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정하한 가격이하로 하락하거나 폭락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당해 축산물의 수매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매지원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수매기간·수매장소·수매축산물의 비축 및 판매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4장

제2절 축산물의 등급화 거래

제43조(등급화의 촉진) ① 농림수산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원활 및 가축개량의 촉진을 위하여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에 한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.

② 농림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거래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거래지역, 축산물의 종류·형태 및 시행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지역으로 고시되는 지역(이하 "거래지역"이라 한다)안에 있는 도매시장의 지정 도매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을 받아야 할 축산물을 고시지역안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거래촉진을 위하여 도축장과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식육판매업소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거나 판매 방법 등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.

제44조(축산물의 등급판정) ① 농림수산부장관은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등급판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등급판정 업무를 총괄하기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등급판정업

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축산물 등급판정사(이하 "등급판정사"라 한다)를 둈다

③ 등급판정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이를 정한다.

④ 농림수산부장관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등급 판정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45조(등급판정사의 업무) ① 등급판정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축산물의 등급판정 및 그 결과의 기록·보관
2. 등급판정인의 사용 및 관리
3. 등급판정 관계설비의 점검·관리
4. 기타 등급판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

② 누구든지 등급판정사가 수행하는 등급판정 업무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.

